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8.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의 견인에 관한 제도가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량의 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34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 (차량의 견인) ①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u></p>	<p><u><삭제></u></p>